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⁴ H04N 1/28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특 1986-0007810 1986년 10월 17일
(21) 출원번호	특 1986-0001503	
(22) 출원일자	1986년 03월 04일	
(30) 우선권주장	60-53412 1985년 03월 19일 일본(JP)	
(71) 출원인	가부시끼 가이샤 도시바 사바 쇼오이찌 일본국 가나가와켄 가와사끼시 사이와이꾸 호리가와쵸오 72번지	
(72) 발명자	마쓰이 히데키 일본국 가나가와켄 가와사끼시 사이와이꾸 호리가와쵸오 72번지 가부시끼 가이샤 도시바 호리가와쵸오 공장내	
(74) 대리인	김명신, 강성구	

심사청구 : 있음

(54) 화상 판독장치

요약

내용 없음

대표도

도 1

명세서

[발명의 명칭]

화상 판독장치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화상판독장치의 실시를 나타낸 모방단면도.

제2도 (a) 내지 제2도 (b)는 제1도에 사용하는 광학적 평판을 나타낸 모방단면도.

제3도는 제2도 (a) 내지 제2도 (b)에 나타낸 광학적 평판으로 이루어진 광학적 평판으로 이루어진 광학적 평판 어레이를 다른 방향에서 본 모방 단면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22 : 조명광원, 23,45 : 광학적 평판 어레이(array), 24 : 광센서, 26,32,37 : 원고, 31,36,41 : 광학적 평판.

본 내용은 요부공개 건이므로 전문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음.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광학적 센서를 설치한 이미지 센서기체와 피판독 물체 사이에 광학계를 설치하고, 조명광원에 의하여 전술한 피판독 물체에 조사된 조사광의 반사광을 전술한 광학계에 의해 전술한 광학센서 위로 도달시켜서 광신호를 화(書)신호로서 판독하는 화상판독 장치에 있어서, 조명광원으로부터 피판독 물체에 도달하는 빛과, 전술한 피판독 물체에서 반사되어 광학센서 위에 도달하는 빛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광학계를 통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판독장치.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전술한 광학계에 입사되는 조사광의 광로의 각도와, 전술한 피판독 물체에서 반사된 반사광이 전술한 이미지 센서 기체에 도달하는 빛의 광로의 각도와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전술한 광학계중에 있어서 다르며, 또한 전술한 광학계에 입사되는 조사광의 광로와 전술한 피판독 물체에서 반사된 반사광이 전술한 이미지 센서 기체에 도달하는 빛의 광로중 적어도 어느 한쪽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전술한 광학계중에 설치된 완전 반사면에서 반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판독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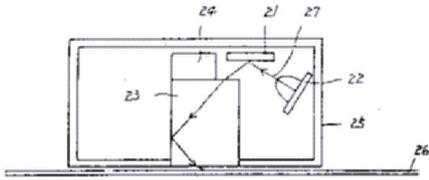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전술한 광학계는 여러개의 광 투과성의 평판을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화상판독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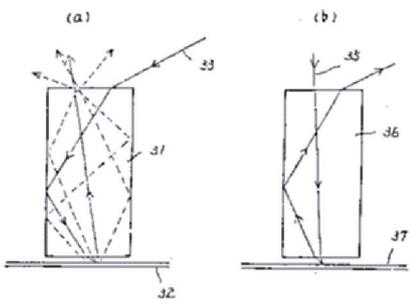
※ 참고사항 : 최초출원 내용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임.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